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38
------------	------

2017년 4월 26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7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7년 4월 26일 상정·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1. 제안이유

- 2016. 5. 29.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7조제4항 신설로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규정(안 제8조)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05:00부터 22:00까지로 규정함

나.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안 제13조 및 별표)

-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별표로 규정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재위임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738호로 제출되어 2017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된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지난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학원법」은 교습시간 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고(제16조제2항),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17조제4항)하였습니다.

○ 그동안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학원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 조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왔으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이러한 제한 범위에 누락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일부 개인과외교습자는 야간 늦은 시각에도 어떠한 법적 제한 없이 개인과외교습을 하여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학원 및 교습소와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¹⁾.

○ 또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관련하여 그동안 「학원법」은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그 세부기준을 교육규칙을 통해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학원법의 개정을 통해 제17조제4항이 신설되어 이러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동 조례안은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신도시 ‘교육불안’ 파고드는 불법 개인과외”, 한국일보 2015.08.26. 보도자료, “아파트-오피스텔 불법 개인과외 범죄‘기승’”, 뉴데일리 2015.12.14. 보도자료 등

나.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

1)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안 제8조)

○ 동 개정조례안 제8조는 「학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습시간의 적용 대상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이외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총 21,649명으로, 그동안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영세하고 생계적 특성이 있어 교습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최근 이를 악용하여 기업형 과외나 고액과외가 성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²⁾

○ 한편 개인과외교습 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학원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75개교 290학급 학부모 7,742명과 (사)한국교습자총연합회³⁾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결과 응답학부모 중 73.8%의 학부모와 (사)한국교습자총연합회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

2) 2016.5.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참고.

3) (사)한국교습자총연합회는 2006년 설립된 단체로서 개인과외교습자 및 교습소 교습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임. 현재 개인과외교습자가 포함된 공식 단체는 동 연합회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됨(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493, 2017.4.11.).

간 제한 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교습시간의 제한은 상위법을 반영한 사항으로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이 이에 찬성하였는바, 법률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시간제한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서울시 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시간을 준수하여 불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기준 : 2017.4.1., 단위 : 명)

교육 지원청명	교습 분야					계
	입시, 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특수교육	기타	
동부	1,147	9	215	0	23	1,394
서부	2,062	17	541	0	61	2,681
남부	1,278	24	242	0	27	1,571
북부	2,583	76	518	0	79	3,256
중부	666	29	186	0	18	899
강동송파	2,006	6	399	0	12	2,423
강서양천	2,013	7	328	0	41	2,389
강남서초	1,593	199	512	0	60	2,364
동작관악	1,481	27	343	1	21	1,873
성동광진	858	16	211	0	27	1,112
성북강북	1,350	12	298	1	26	1,687
계	17,037	422	3,793	2	395	21,649

[표-2]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⁴⁾

(단위 : 명)

설문대상			설문에 대한 의견			
학교급	조사인원	응답인원	찬성		반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초	3,473	2,949	2,316	78.5	633	21.5
중	2,030	1,803	1,383	76.7	420	23.3
고	2,239	2,044	1,315	64.3	729	35.7
합계	7,742	6,796	5,014	73.8	1,782	26.2

2)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별표)

- 동 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은 「학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별표6]에 규정하고, 안 제4항은 행정처분 기준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학원법」 제17조를 통해 교습의 정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의 중지) 또는 등록말소(폐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처분을 위한 벌점 기준, 각 내용별 위반사항 벌점규정 등 그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금번에 개정된 「학원법」에서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학

4) 학부모 설문 내용

1. 조사기간 : 2016.10.12.~11.03
2. 대상 : 자치구별 초·중·고 1개교(총75개교)의 학년별 1학년(총300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 초등학교 : 25개 자치구별 초등학교 각1교(공립 23교, 사립 2교)
 - 중학교 : 25개 자치구별 중학교 각1교(공립 18교, 사립 7교)
 - 고등학교 : 25개 자치구별 일반교(공립 8교, 사립 7교), 특목교 및 자사고(공립 1교, 사립 4교), 특성화교(공립 1교, 사립 4교)

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 하였는바,

-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학원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중 “행정처분 적용기준”의 일부만 조례안에 반영하였을 뿐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벌점의 합산 기간과 방식 및 반복 위반시 벌점의 적용 방식 등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⁵⁾이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시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⁶⁾.

5)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6) 조례안에는 ‘학원규칙’ 별표 4의 “행정처분 적용기준” 중 1호와 2호 상단만 반영되고, 2호 하단 및 3호와 4호는 누락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 4]

행 정 처 분 기 준
(제16조제4항, 제21조제1항 관련)

벌점 (점)	31 ~ 35	36 ~ 40	41 ~ 45	46 ~ 50	51 ~ 55	56 ~ 60	61 ~ 65	66 이상
행정 처분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 행정처분 적용기준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2. 위반 사항 적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 처분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 이후(같은 날을 포함한다)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3. 같은 사항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전 회차시에 부과한 벌점에 3차시 부과한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4. 같은 위반 사항 중 위반내용과 정도를 달리하여 반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점수로 적용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교육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벌점의 합산 기간, 벌점의 적용 방식 등 행정처분 기준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로 규정하기 위해 안 [별표6]을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38
----------	------------

제안연월일 : 2017년 4월 26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교육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벌점의 합산 기간, 벌점의 적용 방식 등 행정처분 기준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로 규정하기 위해 안 [별표6]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6]의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 수정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중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를 5로 한다.

3.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가.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사항별로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세분하여 정한다.

나. 벌점은 위반행위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하 5점부터 최고 66점까지로 한다.

4. 행정처분의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나.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다.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달리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p> <p>1. 교육장은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 교습소가 법 제17조 제2항,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면 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p> <p>2.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벌점제를 운영하며,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font-size: small;">벌점 (점)</th> <th style="font-size: small;">31~ 35</th> <th style="font-size: small;">36~ 40</th> <th style="font-size: small;">41~ 45</th> <th style="font-size: small;">46~ 50</th> <th style="font-size: small;">51~ 55</th> <th style="font-size: small;">56~ 60</th> <th style="font-size: small;">61~ 65</th> <th style="font-size: small;">66 이상</th>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행정 처분</td> <td style="font-size: x-small;">정지 7일</td> <td style="font-size: x-small;">정지 14일</td> <td style="font-size: x-small;">정지 30일</td> <td style="font-size: x-small;">정지 45일</td> <td style="font-size: x-small;">정지 60일</td> <td style="font-size: x-small;">정지 75일</td> <td style="font-size: x-small;">정지 90일</td> <td style="font-size: x-small;">등록 말소</td> </tr> </table> <p style="font-size: x-small;">※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 으로 한다. ※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p> <p>3.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정하며, 위반행위 별 벌점은 위반행위의 경중·위반정도 및 2년 이내의 반복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하 5점부터 최고 66점의 범위로 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p>	벌점 (점)	31~ 35	36~ 40	41~ 45	46~ 50	51~ 55	56~ 60	61~ 65	66 이상	행정 처분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p>[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 -----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가.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사항별로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세분화하여 정한다.</p>
벌점 (점)	31~ 35	36~ 40	41~ 45	46~ 50	51~ 55	56~ 60	61~ 65	66 이상												
행정 처분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data-bbox="819 528 927 560"><신설></p> <p data-bbox="819 1214 1451 1390">4. 이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소를 폐지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법</p>	<p data-bbox="1480 309 2103 485">나. 법률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은 위반행위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하 5점부터 최고 66점까지로 한다.</p> <p data-bbox="1480 528 1966 560">4. 행정처분의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p> <p data-bbox="1480 576 2103 655">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p> <p data-bbox="1480 671 2103 935">나.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 이때,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p> <p data-bbox="1480 951 2103 1174">다.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달리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본다.</p> <p data-bbox="1480 1214 1711 1246">5.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처분으로 인하여”를 “교육장은 행정처분으로”로, “많다고 인정될 때”를 “크다고 인정할 경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행정처분의 대상·기준·절차·처분기간”을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 1. 교육장은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면 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 2.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벌점제를 운영하며,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벌점 (점)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이상
행정처분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 으로 한다.
※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 3.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가.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사항별로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세분하여 정한다.
 - 나. 벌점은 위반행위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하 5점부터 최고 66점까지로 한다.
- 4. 행정처분의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 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나.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

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다.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달리 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별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본다.

5. 이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소를 폐지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p> <p>제13조(행정처분)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교습의 정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의 중지)</p> <p>2. 등록말소(폐지)</p> <p>②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④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처분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 ----- -----.</p> <p>제13조(행정처분)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삭 제></p> <p><삭 제></p> <p>② <삭 제></p> <p>③ 교육장은 행정처분으로----- ----- 크다고 인정할 경우----- -----.</p> <p>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p>																		
<p><신설></p>	<p>【별표 6】</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p> <p>1. 교육장은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면 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p> <p>2.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별점제를 운영하며, 별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font-size: small;">별점(점)</th> <td>31~35</td> <td>36~40</td> <td>41~45</td> <td>46~50</td> <td>51~55</td> <td>56~60</td> <td>61~65</td> <td>66 이상</td> </tr> <tr> <th style="font-size: small;">행정처분</th> <td>정지 7일</td> <td>정지 14일</td> <td>정지 30일</td> <td>정지 45일</td> <td>정지 60일</td> <td>정지 75일</td> <td>정지 90일</td> <td>등록말소</td> </tr> </table> <p>※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으로 한다.</p> <p>※ “정지”는 학원, 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p>	별점(점)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이상	행정처분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말소
별점(점)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이상											
행정처분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말소											

현행	개정안
	<p>3.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은 제13조 제4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가.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사항별로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세분하여 정한다.</p> <p>나. 벌점은 위반행위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하 5점부터 최고 66점까지로 한다.</p> <p>4. 행정처분의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p> <p>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p> <p>나.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p> <p>다.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달리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본다.</p> <p>5. 이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법 제17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소를 폐지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p>